

365일 24시간 서비스 지원

피해자
직접신고

기관 연계
및 접수



상담지원
Consultation Support



의료지원
Medical Support



수사.법률지원
Investigation Legal Support



보호자 및 보호시설 인계

● 오시는 길



● 지하철 이용시

- 2호선
 - 신림역 7번출구 → 시내버스 5516, 5525번 이용(10분)
 - 신대방역 3번출구 → 마을버스 5번 이용(10분)
- 7호선
 - 신대방3거리역 2번출구 나와서 직진(약 150m) → 길 건너 마을버스 5번 이용 또는 도보(15분)
 - 보라매역 1번출구 → 도보(20분)

- 1호선
 - 대방역 3번출구 → 마을버스 5번 이용(20분)

● 버스 이용시

병원정문앞 : 153, 5516, 5525, 5612, 5(마을버스)
 보라매병원입구(구 모자원고개) : 152, 461, 504, 5516, 5535, 5612, 6513, 6514, 6515
 롯데백화점 : 5524, 5526, 6511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여성가족부 지원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 (보라매병원 희망관 2층)
Tel: 02)870-1700, 1117 Fax: 02)870-1116

www.smsonestop.or.kr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여성가족부 지원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SNH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Tel. 02-870-1700, 870-1117 Fax. 02-870-1116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보라매병원 희망관2층)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는
 여성가족부 · 서울특별시 · 서울지방경찰청 · 보라매병원 4자 협약기관입니다.

지원안내

상담지원

- 사례접수 및 면담조사
-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을 통한 심리 안정고취
- 유관기관과의 연계

의료지원

- 응급의학과와 응급치료
- 산부인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등 진료지원
- 피해자의 의무기록 등 증명서 발급지원
- 성폭력 응급키트 증거채취

수사지원 · 법률지원

- 수사 및 사건진행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 증거물 채취
- 여성경찰관의 피해자 진술조서(진술녹화) 작성
- 신속한 사건연계 및 공조수사로 가해자 검거에 기여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안내

e 유선 및 인터넷 상담도 가능합니다.

- 피해 직후의 대처요령, 수사와 고소 진행과정 등에 대한 친절한 전화상담
- 인터넷 홈페이지(www.smonestop.or.kr)의 전용게시판을 통해 상담가능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강요 또는 위협하는 모든 정신적,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말합니다. 즉, 성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강간미수, 강간, 성적가혹행위, 음란물보기, 윤락행위 강요, 인신매매, 아내강간 등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모든 행위가 성폭력에 속합니다.

●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 몸을 씻지 않고 바로 112 신고하기
- 당시 입었던 옷, 증거품을 습기가 없는 코팅이 안 된 종이가방에 보관하기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거나 병원 진료 받기
- 피해가 있던 장소를 그대로 보존하기

성매매피해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적 인신매매, 폭행·위계 또는 선불금 등의 채무 등에 이용되었거나 협박상태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등을 말합니다. 즉, 업주에 의해 알선된 성매매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성매매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해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혹은 재산상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 즉시 112 신고하거나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하기
- 위급상황을 대비하여 피난 경로 파악 및 1366 상담 전화
- 피해 부위에 대한 병원진료 및 사진 등으로 증거 확보하기
- 이웃에게 폭행 의심의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 해 주기를 부탁해놓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 각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혹은 경찰서에 즉시 신고합니다.
- 무엇보다 주변의 관심이 필요합니다.